

제1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면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5면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6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72
------------	------

발의연월일 : 2007. 5. .

발 의 자 : 정인훈의원 외 8인

1. 제정이유

종로구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안 제4조)
- 다. 지원절차는 신생아의 부모가 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공부 등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면 구청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을 둠 (안 제7조)
- 마. 구청장과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도록 함 (안 제8조)

3.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2005.5.18 법률 제7496호]

4. 예산수반사항 : 있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출산을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 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④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호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계	의 자녀 ☐ 둘째 ☐ 셋째이상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자택		이동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직장이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시내거주 기간확인	부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민원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

(동)

[illegible]

